

강원도 강릉의료원

수신자 :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: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결의

1. 우리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정망 역할수행과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의 시혜를 제공하고자 의료급여환자, 극빈자,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나

2.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, 포괄수가제시행 등 적정진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행과

3. 진료비감면에 본인 부담 완화로 장기입원환자 발생, 의업수입 감소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아 래 □

○ 개정사유

-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변화 ~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
- 공공병원으로써의 정부정책 수행 ~ 신포괄수가제 시행
- 적정진료 필요 ~ 진료비 감면에 따른 평균재원기간 증가
- 경영부담 증가 ~의업수입 감소

○ 개정내용

- 의료급여1종 및 장애인수첩소지자중 의료급여 2종 환자 식대감면 폐지
(추천된 무료진료대상자 제외)

○ 시행일자 : 2012년 8월 1일

붙임 :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끝.

강원도 강릉의료원장

담당자 : 문 원무팀장

협조자 : 건강보건관리팀장 : 중무기획팀장

시행 강의총무2012- (12.07.06) 접수

☎ 210-020 강원 강릉시 남문동 164-1번지

☎ (033)610-1431 전송 (033)610-1414

원 장

간호과장

/ http://gnmc.or.kr

/ 공개

□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감면 시행규칙 신규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적용범위) 생략</p> <p>1. 의료급여1종 및 장애인 수첩소지자중 의료급여2종 대상자의 경우와,</p> <p>2. 강릉시장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 진료일 현재 입소 중인자의 경우는 진료비 및 식대중 본인부담금의 감면은 별표1과 같다.</p> <p>3 - 4 생략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현행과 같음.</p> <p>1. 제2조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감면은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에 의한다.</p> <p>2. <삭제></p> <p>3 - 4 현행과 같음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조(감면제외) 진료비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1. 치과의 경우, ①-② 생략</p> <p>2. 입원 물품비는<삽입>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.</p> <p>3 - 4 생략</p>	<p>제4조(감면제외) 진료비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1. 치과의 경우, ①-② 현행과 같음.</p> <p>2. 입원 물품비와 식대는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.</p> <p>3 - 4 현행과 같음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율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행일자:2004.6.1</p>	<p>별표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율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행일자:2012.8.1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</th> <th>수급권자</th> <th>감면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</td> <td>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무료진료대상자</td> <td>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사회복지시설 입소자</td> <td>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의료급여2종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건강보험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</td> <td>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	수급권자	감면액	비고	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	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무료진료대상자	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사회복지시설 입소자	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의료급여2종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50%		건강보험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		일반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급여종별</th> <th>감면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의료급여 환자</td> <td>의료급여1종</td> <td rowspan="2">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</td> <td row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</td> </tr> <tr> <td>극빈자</td> <td>무료진료대상으로 추천된 자</td> <td>진료비(식대포함) 본인부담금의 1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사회복지시설 입소자</td> <td>의료급여1종</td> <td rowspan="2">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</td> <td row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</td> </tr> <tr> <td>의료급여 2종</td> <td>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건강보험</td> <td>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일반</td> <td>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급여종별	감면액	비고	의료급여 환자	의료급여1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	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	극빈자	무료진료대상으로 추천된 자	진료비(식대포함) 본인부담금의 100%		사회복지시설 입소자	의료급여1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	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	의료급여 2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%		건강보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		일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
대상	수급권자	감면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	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료진료대상자	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시설 입소자	의료급여 1종, 장애인수첩소지자 중 의료급여2종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료급여2종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강보험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반	진료비, 식대중 본인부담금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급여종별	감면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료급여 환자	의료급여1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극빈자	무료진료대상으로 추천된 자	진료비(식대포함) 본인부담금의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복지시설 입소자	의료급여1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료급여2종 중 장애인수첩소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료급여 2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강보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감면 시행 규칙

제정 2004년 6월 1일

개정 2012년 8월 1일

제1조(목적) 강릉의료원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7조1항에 의거,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가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감면대상) 다음 각호를 감면대상으로 한다.

1. 의료급여1종 및 장애인수첩 소지자중 의료급여2종 대상자.
2. 강릉시장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 진료일 현재 입소중인 자.
3. 강릉시 읍·면·동사무소 및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된 무료치료대상 극빈자.
4. 본원직원 및 직원의 피부양자.

제3조(적용범위)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기준에 의한 보편적인 진료에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때에도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

1. 제2조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감면은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에 의한다.<개정 2012. 8. 1>
2. <삭제 2012. 8. 1>
3. 강릉시 읍·면·동사무소 및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무료진료대상 극빈자의 경우는 매년 진료대상자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감면적용범위는 별표1과 같이 적용한다.
4. 본원 직원 및 직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과 범위는 강릉의료원 단체협약에 의한다.

제4조(감면제외) 진료비 감면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.

1. 치과의 경우,

①보철은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.

②치과과장의 판단하에 진료상 필요한 스켈링 이외의 환자의 요구에 의한 스켈링은 감면에서 제외한다.

2.입원 물품비와 식대는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2. 8. 1>

3.환자의 요구에 의한 특실 및 상급병실 사용료, 영양제투여, 보호자식대, 건강검진목적의 진료행위 등은 감면에서 제외한다.

4.본원직원 및 직원피부양자 감면의 경우는 제4조 1,2,3호의 감면제외 규칙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시행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2. 8. 1>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율표

<개정 2012. 8. 1>

구분	급여종별	감면액	비고
의료급여 환자	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중 장애자수첩소지자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
극빈자	무료진료대상으로 추천된 자	진료비(식대포함) 본인부담금의 100%	
사회복지 시설입소자	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중 장애자수첩소지자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%	
	의료급여 2종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%	
	건강보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
	일반	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%	